

## 교회개척지원자 자격(교회개척 지원 및 관리 규정 제7조)

① 여의도순복음교회(이하 '본 교회') 및 제자교회에서 3년 이상 시무한 현직 교역자, 본 교회 교역자 시무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선교사 또는 본 교회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역자

② 교회개척실 및 교회개척분과위원회, 교무국에서 자격을 심사하여 선발한다.

③ 교회개척의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충족시켜야 한다.

1. 교회개척의 사명이 있는 자라야 한다.
2. 본 교회 교역자는 최소 은퇴 5년 전(남자 만 60세[1954년 이후 출생자], 여자 만 50세[1964년 이후 출생자])에 교회 개척을 지원하고 퇴직하여 교회 개척한다.
3. 본 교회 교역자는 최소 은퇴 5년 전(남자 만 60세[1954년 이후 출생자], 여자 만 50세[1964년 이후 출생자])에 교회 개척을 지원하지 않으면 교회개척지원을 할 수 없다.
4. 개척지원금을 분담하는 제자교회 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위 1, 2, 3호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갖추어야 교회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교회개척지원금만 지급한다.

### 교회개척지원자 유의사항

교회개척지원자에 대한 선발은 교회개척지원 및 관리규정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심사를 통해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(재)순복음선교회 개척담당 부목사 임석명